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가중처벌〉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85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가중처벌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6. 11.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피해를 낳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가중 처벌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① · ② (생략)	제7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 ----- -----.
<u>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u>	<u>⑤ 제2항 또는 제3항의</u> -----

현행	개정안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양산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현행법 제70조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고 있음.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법정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 가중하여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70조제3항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수준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¹⁾,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이 빠르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가중된 처벌로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²⁾.

- 따라서, 이미 「형법」에 따른 법정형보다 가중된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을 개정안과 같이 다시 가중하는 것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형벌체계의 균형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을 보임.
- 둘째, 안 제70조제3항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사용한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인공지능 기술 등’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어떠한 경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제작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컴퓨터 그래픽(CG)이나 영상 합성·편집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제작이 가능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형이 가중되는 대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 외의 방법으로 제작한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 외의 방법으로 제작된 경우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권리 제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바, 법률 개정에 따른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의 경우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³⁾하고 있음.

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용

-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허위 콘텐츠를 대량 생성할 수 있어 급속하고 광범위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중처벌 및 몰수·추징 규정 신설에 동의함.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신중검토

- 현행법은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 상향이 곧 해당 범죄 피해 방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입법 영역에서 평등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신중검토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규정이므로, 개정안의 가중 처벌 규정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처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되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등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신중검토

-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인공지능 기술 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등은 명확성 원칙
에 반할 소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8